

발 급 번 호	국 세 행 정 지 방 세 행 정 경력증명신청서 경리병과근무		처리기간		
			1일		
①성 명			②주 민 등 록 번 호		
③주 소					
④현 재 또 는 퇴직시 근무처			⑤현재 또는 퇴직시직급 (계급)		
⑥세 무 사 자 격 시 험 일 부 면 제 구 분	☐ 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제1호 해당자(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) ☐ 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제2호 해당자(지방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) ☐ 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제3호 해당자(지방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) ☐ 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1항제4호 해당자(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) ☐ 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2항제1호 해당자(국세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) ☐ 「세무사법」 제5조의2제2항제2호 해당자(국세행정경력 20년 이상인 자)				
국세 행정· 지방세행정· 경리병과 근무경력	⑦근무기간	⑧근무연수	⑨근무처	⑩담당업무	⑪확인기관의 장
	—	년 월			인
	—	년 월			인
	—	년 월			인
	—	년 월			인
	—	년 월			인
	⑫합 계	년 월			
위와 같이 (국세행정·지방세행정·경리병과)근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년 월 일 신청인 인					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(증명기관장) 인					

작 성 요 령

1. 이 경력증명서는 최종 근무처의 소속행정기관장(부대장)이 발급합니다.
2. ④근무처란 및 ⑤직급(계급)란에는 공무원(군인)으로서의 현재 또는 퇴직 당시의 근무처 및 직급(계급)을 기재합니다.
3. ⑥세무사자격시험일부면제구분란의 해당란에 √표를 합니다.
4. 경력란중 ⑦근무기간란 및 ⑧근무연수란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세행정·지방세행정 또는 경리병과근무에 종사한 근무기간 및 근무연수를 기재하고,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5. ⑪확인기관의 장란은 지방세행정경력을 확인할 때에 사용합니다. 최종 근무처의 소속행정기관장이 인사기록카드 사본에 의하거나 또는 관련기관간의 확인과정 등에 의하여 지방세행정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기관의 장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,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⑩담당업무란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근무당시 소속행정기관장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.
6. ⑫합계란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의 당해 경력을 합계하여 기재한 후 그 위에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야 합니다.